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117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4년 8월 12일
4.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II. 제안이유

- 다문화학생, 특히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하 “이주배경학생” 이라 함) 증가율이 높아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 요구가 커짐.
- 의사소통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학생을 지원하고 단위 학교의 관련 업무 부담 경감과 교육과정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 집중 교육을 학교 편·입학 초기 단계에 제공할 필요 있음.
-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및 학교생활적응 교육을 안정적 시스템을 갖춘 한국어교육 전문 교육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교육청이 성과를 관리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를 추진하고자 함.

### III. 주요내용

#### 1. 위탁사무명 :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7조(위탁형 한국어 예비학교), 11조의2(사업의 위탁)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7조(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을 집중 지원하는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이하 “한국어예비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한국어예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센터 및 다문화교육 사업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필요성

- (국가적)이주배경학생 위한 “한국어 교육체계 전면 강화” (교육부, 2023.9.1)
- (사회적)다문화사회 진입 대비 이주배경학생 지원대책 강화
- (전문적)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이주배경학생 입학 초기 한국어 집중 교육 지원 체계 강화
- (현장요구)학교생활적응을 위해 입학 초기 한국어 집중 교육 필요

1) 「2023~2027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다문화교육 중장기 계획, 교육부, 2023.9.)

현장 의견	<p>▶현장 의견: 학교 입학 초기 한국어 및 학교생활적응 지원 교육 강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 기간 최소화) 특정 국가 학생들 중심의 모국어 사용 현상 심화로 장기간 위탁보다 단기간 집중 교육하는 것이 한국어 사용능력 향상과 재적교 복귀 후 학교생활적응 과정에 도움이 됨</li> <li>- (접근성 고려) 초·중·고 학생 특성상 안전한 등하교가 가능한 거리에 위치</li> </ul>
실태 조사	<p>▶이주배경학생 교육 관련 가장 힘든점 (조사 기간: 2024. 5. 20.~5. 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의사소통(한국어 부족) &gt; ②교육지원인력 부족 &gt; ③학부모와의 소통 &gt; ④학습지도 &gt; ⑤심리정서 불안 &gt; ⑥통계 파악 어려움 &gt; ⑦기타</li> </ul>

### 3.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 전반

- 학교 운영·관리 등에 관한 모든 사항(교육과정 기획·운영, 교재 및 자료 구입, 예산 집행 등 학교 운영 전반)
- 교육활동 기록(출결, 과정중심평가 등) 송부,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재적교 학사일정 안내 등 개별 학생 관리
- 한국어교육, 학교생활적응교육, 진로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외부 강사 채용 및 강사료 지급, 멘토링 연계에 관한 사항
- 생활지도 및 폭력예방, 안전교육,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행사 중 사고 발생시 대책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회계 처리 및 기타 교육청이 지정하는 사항 등

### 4. 민간위탁 기간: 2025. 3. ~ 2027. 2. (2년)

### 5.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 모집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운영 지침」 준용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9명 이내
- 공모후 접수된 제안서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요소 및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 선정

#### 6. 예산 규모: 금800,000천원(금팔억원)

- 연간 운영 기관 수: 2개 기관 예정
- 산출 근거: 2억×2기관×2년=8억
- 1기관 기준 추계액: 금199,432,000원(금일억구천구백사십삼만이천원)\*

※ 1개 기관(1년 운영 기준)의 추계액은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보조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예산 지원 기준 참고), 강사수당, 학급 운영비, 급식비 지원, 시설관리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 예정 원가조사보고서에 근거함

### IV. 참고사항

#### 1.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민간위탁 추진계획: 별첨

#### 2. 관계 법령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7조, 제11조의 2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심혁보)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117호로 제출되어 202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동의안은 이주배경학생에게 한국어 및 학교생활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를 전문 교육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민간위탁 추진 개요

-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는 이주배경학생 중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교육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난 5년간(2019~2024) 서울의 전체 학생수는 11.53% 감소(869,632명 → 769,406명)한 반면, 이주배경학생수는 18.55% 증가(17,929명 → 21,255명)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학교 내 이주배경학생 교육 관련 실태조사<sup>2)</sup>’에 따르면,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 3단계 중 ‘하’ (의사소통이 안되거나 간단한 대화만 가능) 단계에 해당하는

2) 학교 내 이주배경학생 교육 관련 실태조사(서울시교육청)

- 조사기간: 2024. 5. 20. ~ 5. 24.

- 조사참여교: 초중고 658교(중도입국, 외국인학생 재학교 중 약 88% 참여)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8.37%로 나타났으며, 학교현장에서 이주배경 학생 교육 관련하여 가장 힘든 점은 ‘의사소통(한국어 부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온라인 한국어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등의 사업을 통해 다문화학생들의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적응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번 제출된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역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 사업 등을 2025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2년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나.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 검토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제7조 및 제11조의2에 따르면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적응을 지원하는 위탁형 한국어 예비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의 운영 사무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운영·관리 등에 관한 모든 사항 및 개별 학생

관리 및 학부모 상담, 그리고 학생 안전지도 등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 전반을 위탁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탁을 위한 공모 자격에 ‘이주배경학생 교육에 전문성과 함께 교육환경 조성 및 관리 역량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만이 아닌 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동 사무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 사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에 따른 사무로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될 수 있는바, 이는 민간위탁의 대상사무의 적정성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 사무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배경학생 중 재적교에서 위탁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3회기 내외로 운영(1회기 60일 기준)할 계획이며, 2개기관이 기관별로 2학급씩 총 4학급으로 운영되며, 교육 환경을 갖춘 위탁기관에서 한국어 교육과 진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주당 32시수 수업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이며, 한국어 교육을 위한 전문 교원 및 강사와 함께 진로교육 및 학

교생활적응교육 등 프로그램 구성·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명신(2180-8269)



# 관계 법령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4. 5. 23.] [서울특별시조례 제9208호, 2024. 5. 23., 일부개정]

제7조(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을 집중 지원하는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이하 “한국어예비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예비학교는 위탁교육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한국어예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3.20., 2024.5.23.>

1. 다문화학생등을 위한 교육·상담
2.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3.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교생활적응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 28.] [서울특별시조례 제7017호, 2019. 3.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